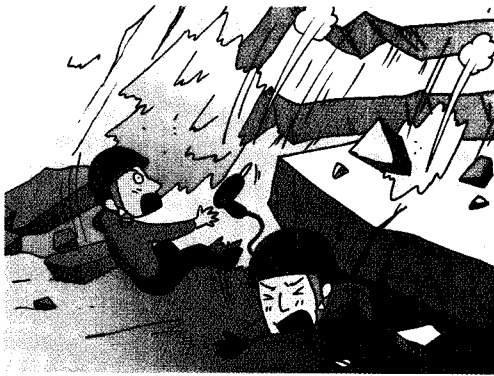


# 》》 암벽 주위에서 채석 드릴 작업 중 암벽 일부가 낙반

|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|
| 업종   | 비금속 광물 광업    |
| 기인물  | 암벽           |
| 생산품  | 대리석          |
| 재해유형 | 낙하           |
| 피해정도 | 인적<br>물적     |
|      | 사망 1명, 부상 1명 |
|      | -            |



## 1. 재해발생개요

OO기업사의 채석장 북쪽 6공구 작업장 내에서 4명의 근로자가 채석 드릴 작업 도중 북쪽 암벽의 암석 일부가 낙반되어 미처 피하지 못한 근로자 중 한 명이 낙반에 깔려 사망하고 다른 한 명은 양쪽 다리가 낙반된 암석에 협착되어 부상당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채석장 북쪽 6공구 작업장의 북쪽 암벽 주위에서 4명의 근로자가 채석 드릴 작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 당일 오전 11시쯤 암벽의 일부가 작업을 하던 2명의 근로자에게 낙반되어 한명은 사망하고 다른 한명은 양쪽 다리가 암석에 협착 부상
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발생원인

- (1) 작업시작전 작업장의 지형·지질 등의 조사 미실시
- (2) 채석작업시 작업계획서를 미작성
- (3) 낙반 우려 지역에 안전조치 미실시

### 나. 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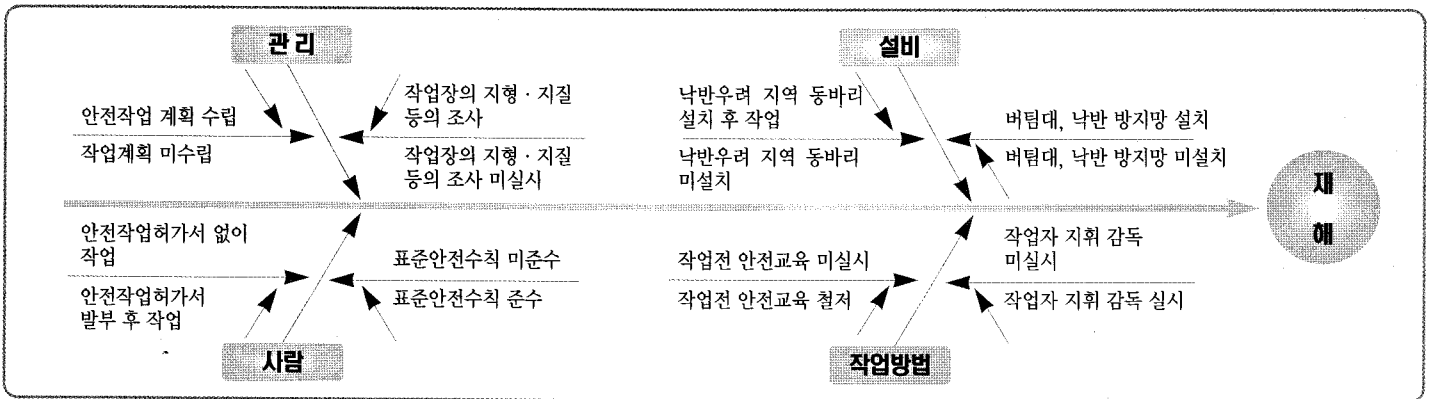
- (1) 작업시작전 작업장의 지형·지질 등의 상태를 조사 후 작업
- (2) 해당 작업에 맞는 장비·인력·작업순서가 포함된 작업계획 수립
- (3) 동바리, 버팀대 및 낙반 방지망을 설치후 작업



## 4. 범위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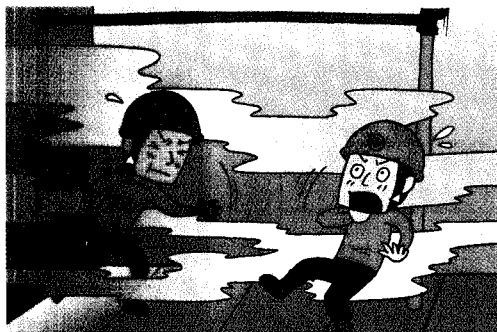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나. 법 제31조 제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# >>> 오폐수 처리장 내 저수조 슬러지 제거 작업 중 질식

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| 업종   | 식료품 제조업         |
| 기인물  | 저수조 내 음식물 슬러지   |
| 생산물  | 당면              |
| 재해유형 | 질식              |
| 피해정도 | 인적<br>물적        |
|      | 사망1명, 부상6명<br>- |



## 1. 재해발생개요

경기도에 소재한 ○○업체에서 오폐수 처리장의 저수조 슬러지 제거를 위해 근로자 6명이 작업하던 중 저수조 내부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내부 작업자 3명 및 보조 작업자 2명 구조 작업자 1명이 부상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사내 오·폐수 처리장 내부의 저수조에 슬러지 제거를 위해 근로자 6명이 저수조 내부로 들어가 음식물 슬러지를 밀대를 이용하여 작업하기 쉽도록 한 곳으로 모우는 작업 중 피재자 1명이 쓰러지고 나머지 3명도 누출된 황화수소 가스에 의해 중독, 이를 구조하려던 근로자 2명도 중독되어 부상
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발생원인

- (1) 작업 전 저수조 내부 유독가스 농도 미 측정
- (2) 작업방법 및 작업안전수칙 미 제정
- (3) 보호구 미착용 및 안전교육 미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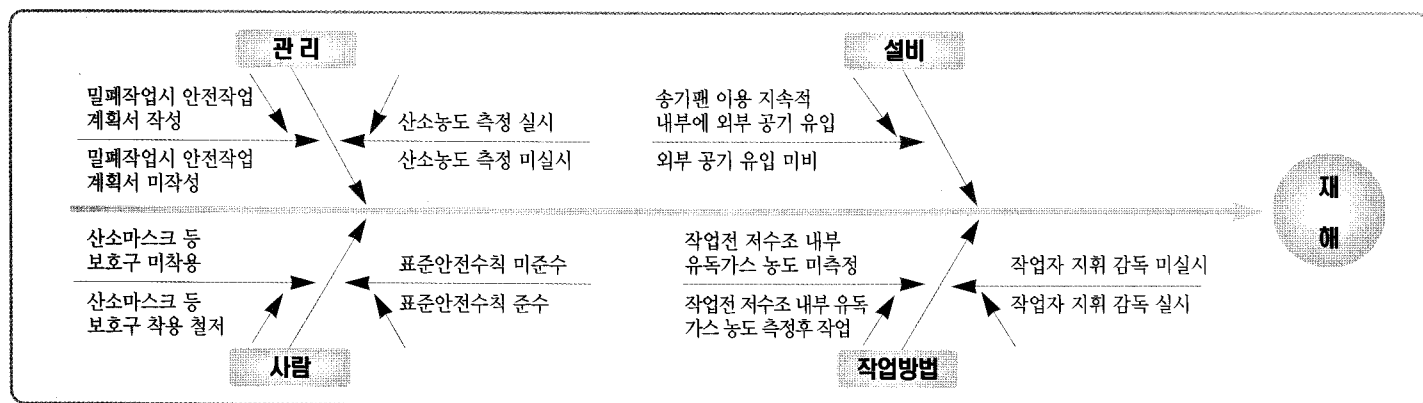
### 나. 예방대책

- (1) 작업시작 전 저수조 내부 산소농도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실시
- (2) 밀폐공간 작업프로그램 실시
- (3) 보호구 착용 및 안전교육 실시



## 4. 범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# >>> 엘리베이터 내 작업 확인 중 추락

|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업종   | 선박건조수리업          |
| 기인물  | 엘리베이터 룸          |
| 생산품  | 블록 전선 포설 외       |
| 재해유형 | 추락               |
| 피해정도 | 인적<br>사망1명<br>물적 |



## 1. 재해발생개요

OO(주)내 2258 D/H D-DECK 내부 각 룸에 코딩 MCT(전선포설 후 공간 부분) 실리콘 작업을 하기 위해 피재자 외 1명이 작업을 할 장소로 이동 중 D-DK 내부 계단 통로 부근에 조명이 어두워 열려 있는 엘리베이터에 작업 할 것이 있나 확인하려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피재자의 1명이 점심조회를 마치고 작업장내 2258 D/H D-DECK 내부 각 룸에 코딩 MCT(전선포설 후 공간 부분) 실리콘 작업을 하기 위해 A-DECK에서 D-DECK까지 외부 계단을 이용해 이동 후 D-DECK 안으로 들어가 작업공구를 챙겨 D-DK 내부 계단 통로 부근에 주변이 어두운 상태에서 문이 열려 있는 엘리베이터 안쪽에 작업 할 것이 있나 확인하려다 엘리베이터 개구부에 추락(약 10M)하여 사망
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발생원인

- (1) 작업장 조명 확보 상태 미흡
- (2) 엘리베이터 문이 개방된 상태로 방치
- (3) 관리감독자 작업 감독 미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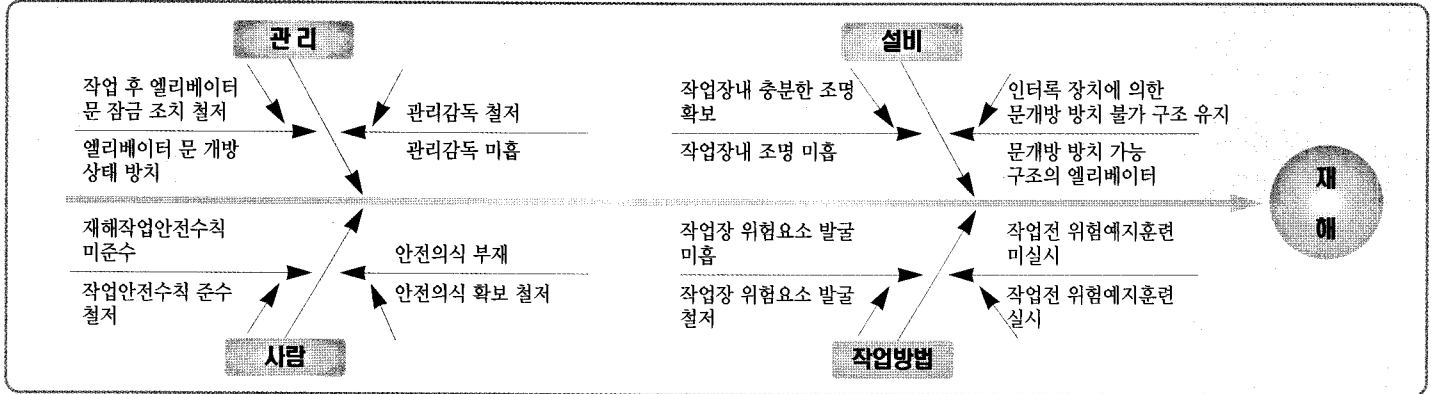
### 나. 예방대책

- (1) 작업장 내 충분한 조명 확보토록 관리
- (2) 엘리베이터 문은 작업이 끝난 후 잠금 조치 실시
- (3) 관리감독 철저



## 4. 범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# >>> Lining Form 제작중 절토 암사면 붕괴

| 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|
| 업종   | 건설업             |
| 기인물  | Lining Form     |
| 생산품  | 철도 노반개량         |
| 재해유형 | 붕괴              |
| 피해정도 | 인적 사망1명<br>물적 - |

건설업  
Lining Form  
철도 노반개량  
붕괴  
사망1명  
-



## 1. 재해발생개요

OO(주)는 철도노반개량 공사현장 터널시점부에서 Lining Form 제작 중 좌측 절토 암사면이 붕괴되며 터널입구 굴착면 중앙의 Lining Form을 강타, 암 붕괴면 반대측 절토면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Lining Form 자재에 맞아 사망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철도 노반개량공사 현장으로 터널 Lining Form 제작 중 Lining 철판을 실은 트레일러가 현장에 도착, 하역을 위해 트레일러에 철판고정용 체인을 풀 때 터널입구 좌측 절토 암사면이 붕괴되며 터널입구 굴착면 중앙의 Lining Form을 강타하고, Lining Form 이 우측(피재자측)으로 약 1.5m기량 밀리며 암 붕괴면 반대측 절토사면 하부에서 작업 중이던 피재자가 전도되는 Lining Form 상부용 주 beam 에 맞아 사망
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발생원인

- (1) 지반굴착시 붕괴 등의 위험방지조치 미비
- (2) 굴착사면 지반의 붕괴·토석낙하 등의 위험방지 조치 미실시

### 나. 예방대책

- (1) 지반 등의 굴착시 붕괴위험방지조치 철저
- (2) 굴착사면 지반의 붕괴·토석낙하 등의 위험방지 조치 철저



## 4. 범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☹

